

임실군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사무기구  
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」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2월 16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규칙 제34호

##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정팀,의사팀” 을 “의정팀, 의사팀” 으로, “지방행정주사,지방농업주사,지방시설주사,지방녹지주사” 를 “지방행정주사, 지방농업주사, 지방시설주사, 지방녹지주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청사, 장비,물품수급 및 홈페이지 관리” 를 “청사, 장비, 물품수급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

7.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한다.

“별표” 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별표」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관련)

| 위원회명    | 직 위  | 직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운영행정위원회 | 전문위원 |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<br>지방시설사무관             |    |
| 농업복지위원회 | 전문위원 | 지방행정사무관 · 지방농업사무관<br>지방시설사무관 · 지방사회복지사무관 |    |